

<p>제2021-174호 2021년 9월 13일(월)</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2501호 도로지정공고(율촌면 상봉리 399번지) 3
- 여수시 공고 제2021-2505호 도로지정공고(돌산읍 평사리 산 273번지) 4
- 여수시 공고 제2021-2510호 경관지구인의 건축선 지정 고시 명칭변경 공고 5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774호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 여수시 규칙 제775호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9
- 여수시 규칙 제776호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1
- 여수시 규칙 제777호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회 람								
--------	--	--	--	--	--	--	--	--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399번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51		61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전라남도 울촌면 상봉리 399	51	2	61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

여 수 시 장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73번지의 건축신고사항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돌산읍 평사리 산273번지	32.48	6	214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10.

여 수 시 장

「경관지구안의 건축선 지정 고시」 명칭변경 공고

여수시 고시 제2015-215호(2015. 8. 27.)로 지정된 여수시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지정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내 건축선을 명칭 변경 지정하여 경관지구내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여 수 시 장

1. 변경일시 : 2021. 9. 8. 이후부터
2. 변경 지정대상·위치·제원
 - 가. 지정대상 : 관내 경관지구 도로변(다만, 소호동 집단미관지구는 25m 이상 대로변에 한함.)
 - 나. 위치·제원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연 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21개소				623,256			
1	우두리 미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우두여중~우두중	40,000	1,000	40	전고560호 87.11.14
2	대1-1호선 연변	시가지 미관지구	문수동삼거리~ 둔덕동 주공아파트앞	19,110	우측 485 좌측 985	13	전고115호 89. 8. 9
3	대3-6호선 연변	시가지 경관지구	9호광장~8호광장	2,760	우측 212	13	전고115호 89. 8. 9
4	중2-8호선	시가지	여문택지개발사업지구	2,420	좌측 186	13	전고115호

	연변	경관지구					89. 8. 9
5	중2-9호선 연변	시가지 경관지구	여문택지개발사업지구	40,430	우측 1,440 좌측 1,670	13	전고115호 89. 8. 9
6	대1-1호선 연변	시가지 경관지구	문수동 삼거리~둔덕시계	34,260	우측 1,320 좌측 1,315	13	전고115호 89. 8. 9
7	대1-2호선 연변	시가지 경관지구	둔덕중앙 아파트 앞	1,980	우측 152	13	전고115호 89. 8. 9
8	대3-6호선 연변	시가지 경관지구	8호광장~ 중로3-9호선 시점	1,990	좌측 153	13	전고115호 89. 8. 9
9	대3-6호선 연변	시가지 경관지구	9호광장~ 중로3-9호선 시점	1,430	좌측 110	13	전고115호 89. 8. 9
10	대2-1호선 연변	시가지 경관지구	서교동 로타리~ 대로2-2호선 시점	28,080	우측 1,052 좌측 1,108	13	전고167호 95. 6.22
11	중앙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6호광장~ 중심상업지경계	19,650	655	15	전고133호 97.5.20
12	학용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6호광장~ 중심상업지경계	15,300	510	15	전고133호 97.5.20
13	죽림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심상업지경계~ 죽림리 지구계	71,966	380	15	전고133호 97.5.20
14	시전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시전동 상업지경계~ 시전동 주거지경계	21,500	820	15	전고133호 97.5.20
15	선원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22호광장~ 동측중심상업지경계	5,850	280	15	전고133호 97.5.20
16	소호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3-23 로변	82,910	3,340	15	전고133호 97.5.20
17	석창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봉계동, 주삼동주거지	17,840	610	15	전고133호 97.5.20
18	학동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신기동 주거지경계~ 화장동 주거지경계	98,260	3,870	15	전고133호 97.5.20
19	선원 2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선원동 주거지경계	10,050	450	15	전고133호 97.5.20
20	무선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무선동 상업지역변	3,340	220	15	전고133호 97.5.20
21	소호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소호동 선착장 일원	104,130			전고2004-241호 04.12.31

3. 변경내용 (건축선지정)

- 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다만, 소호동 집단미관지구는 25m이상 대로변에 한함.)

4.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여수시 홈페이지(공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 061-659-4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위치도



2021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 오 경



여수시 규칙 제774호

붙임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74호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23조의2제3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⑪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칭	지방의회	제1관서 (읍·면·동제외)	기타 관서· 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임 관	행정지원국장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담당관·과의 장(이하 "담당관·과 장"이라 한다)		세입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 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본청 읍·면·동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주무전문위원	경리담당과장, 각 관·과장 (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경제국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읍·면·동의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세정, 징수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관·과 서무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	각 관·과 서무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및 임시관서의 서무 업무팀장(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 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총무업무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팀장	경리업무담당자	총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지출원이 없는 관서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기타 경비	전액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1.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여수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2021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

여수시 규칙 제775호

붙임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수시 규칙 제775호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미등록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미등록경로당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영



여수시 규칙 제776호

붙임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76호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규칙 제777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77호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을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문기술인 중 토목·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호 중 “소켓트”를 “소켓”으로, “넙쁘르”를 “니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공의 조잡또는 조잡의”를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이내에”를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항 목	기 준		배점	평점
총 계			100	
1. 시공능력	합 계		25	
	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전문건설협회발급)	20억 이상	25	
		15억 이상~20억 미만	23	
		10억 이상~15억 미만	21	
		10억 미만	19	
2. 기술능력	합 계		25	
	소 계		10	
	시공기술자보유(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	기준보유 (2명)	10	
	소 계		15	
	시공기술자의 경력(합산) (기술인협회발급)	20년 이상	15	
		15년 이상~20년 미만	13	
		10년 이상~15년 미만	11	
5년 이상~10년 미만		9		
5년 미만		7		
3. 경영상태	합 계		20	
	소 계		10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전문건설협회발급)	30% 미만	10	
		50% 미만	9	
		75% 미만	8	
		100% 미만	7	
		100% 이상	6	
	소 계		1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전문건설협회발급)	200% 이상	10	
		150% 이상	9	
100% 이상		8		
50% 이상		7		
50% 미만		6		
4. 보유장비	합 계		15	
	"별표 1"의 보유 장비"및 추가장비 각 1점 가산	"별표 1"의 보유장비	10	
		래머(80kg 이상)	1	
		콤팩터(1.5톤 이상)	1	
		포장절단기	1	
		발전기(5kw 이상)	1	
		누수탐지기	1	
소 계		15		
5. 면 접	○ 상수도 관련지식 습득 여부(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10	
	○ 적절한 자재사용 및 방법 등 시공능력 여부		5	
6. 행정처분 감 점	- 대표자 개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감점 5점 - 최근 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 1회당 1점, 최고 감점 3점 (전문건설협회 발급)			

<비 고>

1.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면접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 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며,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2. 면접은 신청자(대표자) 또는 선임기술자중 1인이 참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영 업 소 재 지 :

상 호 :

시공기술자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자 격 번 호 : 제 호

위 사람을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본 업소 현장대
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제11조(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밸브, 지수전, 소켓트, 유니온 및 넙쁘르 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

2. (생략)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1조(자재) -----

-----.

1. -----
-- 소켓----- 넙플 --

2.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
-----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

---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

1. ~ 5. (현행과 같음)